

#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의료인력 운영 방안

< '20. 3. 23. 중수본 생활치료센터반 >

## □ 기본 운영 방안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운영 (별첨)

※ 생활치료센터 상주인력은 해당 센터 내 숙박을 원칙으로 함

## □ 지급 대상 및 금액

- (의료총괄지원단(Medical Team Leader)) 각 생활치료센터별로 지원하는 의료기관에서 파견\*된 의사 및 간호사, 행정지원\*\* 등

\* (기존 소속기관에서 유급으로 파견된 경우) 공공기관 또는 군인 기준으로 지급

\* (기존 소속기관에서 무급으로 파견된 경우) 민간모집 지원 기준으로 지급

\*\* 실제 환자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거나 전산, 시설 등을 지원한 경우 군인 행정 지원 기준으로 지급

- (공보의 및 군의관 후보생) 각 생활치료센터에 배치(지원)된 공중보건 의사 및 군의관

\*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또는 군의관 후보생(3.11. 입대) 비용으로 지급

- (민간 모집 의료인력)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을 통해 모집된 의사, 간호(조무)사 \* 민간모집 지원 기준으로 지급

- (공공기관, 군인 파견 직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 행정인력 등 \* 공공기관 또는 군인 수당 기준으로 지급

※ 출장비는 숙박비를 제외하고 1일 4만원 지급. 단, 개인이 건강관리책임자의 허락하에 외부 숙소를 구하는 경우 대구 10만원 지급(경북 등 9만원)

## □ 비용 처리 절차

- (소요 재원) 국비 지원(지자체 교부\*)

\* (경북) 경북대구3(서울대병원인재원), 경북1(중소벤처기업대구경북연수원)

\* (대구) 대구1~충북대구4 경북관할 제외 14개 센터

- (관리 구분)

- (복지부) 의료인력 복무 관리\* 총괄(개인별 근무상황부 관리 등)

\* 의료총괄지원단 의료인력, 공보의, 군의관, 공공기관 파견, 민간모집 인력 등 포함

- (시·도) 민간지원 의료인력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용 지급\*\* 등

\* 의료총괄지원단 의료인력, 공보의, 공공기관 파견 인력은 제외

\*\* 의료총괄지원단 의료인력, 공보의, 군의관, 공공기관 파견, 군인, 민간지원 인력 등 모두 해당

## 참고1 파견 의료인력 지급내역 및 단가

(보상 수당) 최소근무기간을 채운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 또는 기관 사정에 의해 최소근무기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도 근무일수만큼 지급

(모니터링 기간 수당) 최소근무기간을 채운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사정으로 최소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지급 불가

\* 특별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토하여 지급가능

### ○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 : 2주 파견 후 교대

- ※ 공중보건의와 공공기관 파견자의 경우 동의 하 연장 가능하며 군인은 부대동의 하 연장 가능
- 신규 공보의(3.5.일자로 임용되어 3.9.부터 근무)의 경우 △환자치료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경북 청도)내 검체채취 업무(선별진료소 등)는 2주를 근무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외 검체채취 업무(선별진료소 등) △긴급대응반 운영·참여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총 25일 근무

#### <직종별 인건비 내역>

구 분	인 건 비 내 역*
군 인	●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군의원) 일 12만원, 간호사 일 7만원, 임상병리사 일· 방사선사 일 7만원, 행정지원 7만원(일당)
	● 군의원 후보생(3.11입대) 일 28만원
공보의	●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일 12만원
공공기관	●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 일 12만원, 간호사 일 7만원, 임상병리사·방사선사 일 7만원

\* 수당은 위험에 대한 보상 성격이며, 출장비는 별도 정액 지급(대구 10만원, 경북 9만원) 하나, 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우는 숙박비를 제외하고 4만원만 지급

※ 초과근무수당(1만원/시간), 교육 수당(15만원, 1회)

※ 초과근무수당은 주40시간 기준으로 일 최대 5시간만 인정

※ 총 파견일수만큼 수당 지급하되, 연가 병가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날은 파견일수에서 제외

※ 공보의의 추가업무활동 장려금의 경우 별첨1을 참고, 파견기관과 업무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 공보의의 경우 연가/장기병가(4일이상) 기간에는 추가업무활동장려금 및 기타 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며 3일 이하의 불가피한 병가 사용 시 기타비용만 지급

※ 군의원 후보생(3.11.입대)은 민간인 신분으로, 28만원(1일)으로 책정한 것은 신규 공보의가 20일간 일하고 받게되는 금액(기본 급여 및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등)과 비슷하도록 고려한 것임

※ 군의원 후보생은 장기 병가(4일이상)의 경우 특별지원활동수당 및 기타비용을 미지급하며 3일 이하의 불가피한 병가 사용 시 기타비용만 지급

※ 군의원 후보생은 연가 사용 불가(국방부 군사훈련 규정 준용)

- 민간모집 : 최소 1개월 이상(파견인력 동의 하 연장 가능하며, 환자 감소 및 기관의 인력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 해지 가능)

- 의사 45~55만원/일, 간호사 30만원/일 수준

구 분	인 건 비 내 역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35만원</li> <li>●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li> <li>*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li> <li>● 전문직 = 실제 근무일수 × (10만원)</li> <li>●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li> </ul>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20만원</li> <li>●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li> <li>*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li> <li>●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li> <li>- 생활치료센터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li> </ul>
간호조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10만원</li> <li>●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li> <li>*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li> <li>●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li> <li>- 생활치료센터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li> </ul>
임상병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18만원</li> <li>●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li> <li>*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li> <li>●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li> <li>- 생활치료센터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li> </ul>
방사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21만원</li> <li>●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li> <li>*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li> <li>●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li> <li>- 생활치료센터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li> </ul>

- \* 출장비 별도 정액(대구 10만원, 경북 9만원), 교육 수당(15만원, 1회), 초과근무수당(1만원/시간)
- \*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경우 출장비는 숙박비를 제외하고 4만원만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제외하고 지급
- \* 초과근무수당은 주40시간 기준으로 일 최대 5시간만 인정
- \* 1일 최대 5시간까지 시간당 만원 지급
- \* 총 파견일수 : 실제 근무 일수(1시간이라도 근무한 일수) + 대기일수
- \* 대기 일수 : 실제 근무 일수 × 0.2(소수점 이하 절사)
- \* 대기 일수는 유급 휴일에 대한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산정(실제 근무일수가 5일인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포함)
- \* 비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대기일수 만큼 수당 지급
- \* 단, 지자체(대구시) 판단에 따라 대구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등),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업무를 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대구) 임시선별진료소 민간지원인력 운용방안」의 별도 지급 기준 적용

**참고2** 근무상황부 양식

**근 무 상 황 부**(000생활치료센터)

□ (근무자명) 소속 :                      직급 :                      성명 :

근무날짜	근무시간	시간수	비고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확인자 : (복지부)                      (인)

(시도)                                      (인)

## 참고3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본인 \_\_\_\_\_은(는) 000생활치료센터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의료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 및 병원의 제 규칙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생활치료센터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형법 제 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 금지)에 의거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을 및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및 발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생활치료센터의 개인정보보호 규칙 및 보안업무 규칙을 수용하고 준용한다.
3. 재직 중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취득한 진료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의료법 제 21조 2항(전자의무기록)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파일 혹은 수기대장도 사전에 병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의 유출 및 무단사용을 하지 않는다.
4. 생활치료센터내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생활치료센터가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 접근하고, 책임 있고 윤리적인 자세로 사용하며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자신의 계정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생활치료센터 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 할(될) 수 없으며, 본 생활치료센터와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생활치료센터 컴퓨터상에서 이용할 수 없다.
7. 생활치료센터에서 지급받은 전산장비를 소중히 다루고 분실, 훼손 시 일차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
8. 본인은 생활치료센터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되는 전자문서를 생활치료센터 통신망 내에서 점검(발신통제)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수락한다.
9. 퇴사 시에는 업무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지식은 문서화하여 부서에 인수·인계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CD, USB,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완전히 폐기 및 파기한 후 퇴사함을 서약한다.
10. 센터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보안 책임자(원내 0000)에게 연락한다.

작성일자 : 2020 년 월 일

소속기관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 참고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 수집·이용 안내 >

본인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기간에 대한 수당 수령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 기간에 대한 수당지급
-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령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 수집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신용정보법 등

000 생활치료센터 근무기간 : ~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 휴대폰:		

계좌정보

수령인명	은행명	계좌번호

작성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